

제 10 회 대통령배 KeG 경기규정

[던전앤파이터]

[시행 2018.06.30]

(사)한국 e 스포츠협회

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제10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(이하 '제10회 대통령배 KeG'라 한다.) 던전앤파이터 종목의 경기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종목명칭 및 버전)

가. 종목명칭: 던전앤파이터 (이하 '던파'이라 한다)

나. 버전: 경기 시점에서 현재 서비스하는 최신버전으로 한다. 단, 주최측에서 대회용 서버 및 계정을 준비한 경우 해당 서버 및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.

제 2 장 대회참가

제 3 조 (참가자격 및 제한)

가. 연령제한: 2018년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분류에 따른 이용 가능 연령자로서 2006년 대회 개최일 이후 출생자는 참가할 수 없다. 대회 당일 사진이 부착된 본인 신분증(학생증, 청소년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확인을 통해 검사한다.

나. 지역연고제한

- 1) 모든 참가자는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참가신청할 수 있다.
- 2) 지역본선 대회 참가 후 소속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, 올해 대통령배 KeG와 KeSPA CUP, 전국체육대회 등을 포함하여 한국 e스포츠협회가 주최, 주관하는 모든 아마추어 대회에는 해당 소속지역으로 참가해야 한다.

다. 자격제한: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를 할 수 없다.

- 1) 다음 대회에 출전 경험이 있는 자. 단, 지역 본선이 시작된 이후에 참가한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 - 가) 2017 액션토너먼트 스프링, 서머, 폴 파이널 참가 경력이 있는 자
 - 나) 2018 DPL: P 스프링 본선 참가 경력이 있는 자
- 2) e스포츠 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

3) 기타 해당 종목사 자체 징계에 의해 대회 출전이 금지된 자

라. 계정제한

1) 지역 본선: 제한 없음

2) 전국 결선: 본인 명의의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.

마. 지역 본선에 참가했던 선수는 타 지역 본선에 중복으로 출전할 수 없으며, 중복 출전 후 입상한 경우 상금, 표창, 훈격은 모두 무효 및 몰수로 처리한다.

제 4 조 (참가자격 제한 검사시점)

가. 연령제한: 대회 당일 사진이 부착된 본인 신분증(학생증, 청소년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확인을 통해 검사한다.

나. 지역연고제한: 지역 본선 신청 후, 타 지역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.

다. 자격제한: 지역 본선 종료 후 지역 본선 진출자 확인 시점에 검사한다. 적발될 경우 지급될 상금 및 상품은 모두 몰수하며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않는다.

라. 계정제한: 지역 본선 종료 후 전국 결선 진출자 확인 시점에 검사한다. 적발될 경우 전국 결선에 참가할 수 없고, 상금 및 상품도 지급되지 않는다. 또한,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않는다.

제 3 장 경기준비

제 5 조 (서버 및 계정)

가. 서버는 현 던전앤파이터 라이브 게임 서버 클라이언트를 사용한다.

나. 지역 본선 이후에는 본인명의로의 계정만 사용할 수 있다.

다. 대회 주최측의 재량에 따라 버그 및 기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6 조 (대전방식)

1 인 개인으로, 자유 결투장의 팀전 모드로 진행한다.

제 7 조 (경기세트 및 게임모드 등)

가. 지역 본선

1) 4 강 이하: 3 전 2 선승제 / 싱글 토너먼트

2) 결승: 5 전 3 선승제 / 싱글 토너먼트

(※ 지역 본선 주최기관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)

나. 전국 결선

1) 8 강 이하: 3 전 2 선승제 / 싱글 토너먼트

2) 4 강~결승: 5 전 3 선승제 / 싱글 토너먼트

제 8 조 (경기방식)

가. 토너먼트 규칙

1) 결투전용모드로 생성한 85 레벨 캐릭터 1 개를 선택해 출전한다.

2) 전 경기 시간은 각 4 분으로 진행한다.

3) 결투장 규정에 따라 상대의 캐릭터를 제압하면 1 세트를 승리하게 된다.

나. 캐릭터 제한

1) 대회에 참여 가능한 캐릭터는 아래와 같으며, 명시되지 않은 캐릭터는 출전이 불가하다.

➢ 마창사 : 듀얼리스트, 뱅가드

➢ 귀검사 : 소울브링어, 버서커, 웨펀마스터, 아수라, 소드마스터, 다크템플러, 베가본드, 데몬슬레이어

➢ 거너 : 레인저(남,여), 스피트파이어(남,여), 런처(남,여), 메카닉(남,여)

➢ 마법사 : 엘레멘탈바머, 빙결사, 엘레멘탈마스터, 소환사, 배틀 메이지, 마도학자

➢ 프리스트 : 크루세이더(남), 퇴마사, 인파이터, 어벤저

➢ 나이트 : 엘븐나이트

➢ 격투가 : 넌마스터(남,여), 스트라이커(남,여), 스트리트파이터(남,여), 그래플러(남,여),

➢ 도적 : 로그, 쿠노이치, 사령술사, 새도우댄서

2) 지역 본선과 전국 결선 진행 도중 캐릭터를 변경할 수 없다.

다. 아이템 제한

1) 장비는 결투전용모드로 캐릭터 생성 후 최초 접속시 지급 받은 장비로 제한한다.

2) 사용하는 장비와 칭호, 크리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.

➢ 무기 및 장비(그레이트) : 숙련된 싸움꾼의 시리즈(80 레벨 유니크)

➢ 사용 가능 칭호 : 없음

➢ 사용 가능 크리쳐 : 없음

라. 전장선택

- 1) 경기 전장은 1set 주점, 2set 사망의 탑, 3~5set 설산 수련장 맵으로 진행한다.

제 4 장 경기진행

제9조 (개인장비)

- 가. 경기에 사용되는 PC 및 모니터, 네트워크 환경 등은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상태로 사용한다. 선수가 임의대로 다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준비되지 않은 다른 장비요구는 수용되지 않는다.
- 나. 키보드, 마우스, 헤드폰(이어폰), 연장선, 마우스패드, 마우스 거치대 등 선수가 별도로 준비한 개인장비는 사용 가능하다.
- 다. 선수 본인이 가지고 온 장비에 문제가 있어 경기준비가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.
- 라. 마우스 프로그램 외 외부 프로그램은 사용이 금지된다.
- 마. 클라이언트 조작을 통해 기본 설정 범위를 초과한 설정은 금지된다.

제 10 조 (의사소통)

- 가. 대회에 피해(영향)를 주는 행위 또는 언행은 금지되며,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실격 조치할 수 있다.

제11조 (경기 중 이상현상)

- 가. 지역 본선 및 전국 결선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선수는 거수를 통해 운영진에게 알린다.
 - 1) 상황 조치 불가 또는 지속적인 이상 현상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재경기, 경기속개, 우세승 판정을 할 수 있다.
- 나. 서버, 인터넷 장애 또는 경기장 문제로 인해 전체 참가자가 디스커넥트 발생 시 재경기를 시행한다.

제12조 (이의제기)

- 가. 게임 상의 문제로 인해 게임 속개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, 운영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후 해당 내용의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모든 경기는 그대로

지속해야 한다.

- 나. 경기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이의제기는 경기 후 5분 이내로 운영진에게 해야 하며, 그 이후의 이의제기는 효력을 상실한다.
- 다. 운영진은 대회 진행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의 제기도 받지 않으며, 운영진이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대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진행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른다.

제 5 장 징계

제 13 조 (비 신사적 행위)

- 가. 경기 진행 중 고의로 게임을 종료,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경고가 주어진다.
- 나. 경기 도중 플레이어가 아닌 제3자의 행동이 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운영진은 퇴장 조치할 수 있다.
- 다.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(욕설, 부당행위, 비 매너) 등으로 대회 분위기를 손상하거나 상대 선수를 자극하는 행위는 운영진의 판단 하에 실격 조치할 수 있다.

제 14 조 (부정행위)

- 가. 게임 상에서 발생하는 버그를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, 주최측의 판단 하에 실격 조치 및 향후 대회 참가자격을 박탈한다.
- 나. 승부조작과 관련해 의논이 진전된 상태라도 해당 경기 시작 직전까지 주최측에 제보한 선수는 처벌하지 않는다.
- 다. 승부조작과 관련된 신고사항은 선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라. 실제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했을 경우 넥슨, 한국 e 스포츠협회와 협의 하에 향후 대회 진출 불가는 물론,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제15조 (징계)

- 가. 금지사항 위반 및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 운영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해당 세트 몰수패 조치할 수 있다.
- 나. 욕설, 경기 방해 등 심각한 경고를 받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진은 상황에 따라 해당

경기 몰수패 또는 실격 조치할 수 있다.

- 다. 운영진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든 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 조치된다.
- 라.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은 해당 선수를 퇴장조치 할 수 있다.